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서울특별시장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일산화탄소, 오존 등 6가지 환경기준치를 설정한 바 있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및 환경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가. 질소산화물은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 소각장, 자동차 등에서 고온상태에서 연소될 경우 대기중의 질소와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되어 발생하며 이산화질소(NO_2)는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대기중에서는 탄화수소 및 오존(O_3)과 반응하여 광화합성 스모그를 형성하는 대기오염원의 주요인으로 이를 엄격하게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나. 이번 조례의 질소산화물 기준치도 기존시설은 2004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여 5년간 유예시키는 것.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주 배출 원인 경유차량 등(전체 발생량의 80.8%)이 제외되어 발전부문(전체 발생량의 2.9%), 난방부문(전체 발생량의 12.9%)에 불과해 저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또한 경유차량을 비롯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배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의 관리는 오염원이 배출하는 오염량을 가능한 한 가장 적게 배출하게 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나 이번 조례안에는 질소산화물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배출기준을 조속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유차량 현황을 보면, 전체 차량의 38%로 일본 15%, 말레이시아 19%, 미국 3% 등과 비교하면 경유차량 보유비율이 매우 높고, 차량운행거리, 시간도 일반승용차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라. 기체연료사용 발전시설, 1일 50톤 이상 규모의 소각장 등 10개소이고, 대부분이 시설부담능력이 있는 사업체이므로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 탈질소 설비를 갖추어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질소산화물의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배출허용기준 (제2조관련)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기 존 시 설		신규시설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일부터
질소산화물 (NO_2로서)	가. 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1) 발전용내연기관	250(13)ppm이하	100(13)ppm이하	100(13)ppm이하
	(2) 기타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이상	120(4)ppm이하	50(4)ppm이하	50(4)ppm이하
	(나) 설비용량 10MW이상 100MW미만	150(4)ppm이하	80(4)ppm이하	80(4)ppm이하
	(다) 설비용량 10MW미만	150(4)ppm이하	100(4)ppm이하	100(4)ppm이하
	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에 한한다)	100(12)ppm이하	80(12)ppm이하	80(12)ppm이하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_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신규시설이라 함은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또는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을 말한다.